

의정부지방법원 2020. 5. 28 선고 2019나207319, 2019나207326 판결 [건물철거,토지인도 및
부당이득반환청구 등 (병합)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]

전 문

원고(탈퇴) 주식회사 A

원고승계참가인,피항소인

B

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

담당변호사 최정병

피고,항소인 J

변론 종결 2020. 4. 23

판결선 고 2020. 5. 28

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. 5 . 16 . 선고 2017 가단112980 , 2017 가단 135945(병합)

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 B에게 포천시 P 대 3,471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중 별지 17도면 표시 ①,②, ③,④, ⑤, ⑥, ⑦,⑧, ⑨,⑩,⑪, ⑫, ⑬,⑭,⑮, ⑯,⑫,⑬,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대지 237㎡의 지상에 건축된 같은 도면 표시 ①, ②,③, ④,⑤, ⑥,⑩, ⑩,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시멘트 블록조 함석지붕 가건물 14.64㎡, 같은 도면 표시 ⑩, ⑧, ⑨,⑩,⑩의 각 점을차례로 연결한 선내 (다) 부분 시멘트 블록조 스투트형 플라스틱 지붕 단층 주택133.27㎡ 및 같은 도면 표시 ⑬,⑭,⑮,⑮,⑪,⑫,⑬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라) 부분 시멘트 블록조 함석지붕 화장실 및 창고 16.34㎡를 각 철거하고,위 (가) 부분대지 237㎡를 인도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,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승계참가인 B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(8쪽 8행새쪽 10행 제외)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[피고는, 원고승계참가인 B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유일한 목적이 위 지분을고가매도하는 것이고, 이 사건 토지는 주택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등 원고승계참가인B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승계참가인 B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유일한 목적이 위 지분을 고가 매도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그밖에 원고승계참가인 B의 이 사건 청구의

목적이오직 피고에게 고통과 손해를 주고, 원고승계참가인 B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,그
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.
따라서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]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 B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,제1심 판결은 이와
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김문성판사 김혜선판사 막세황

별지